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복기왕 · 정준호
박희승 · 손명수 · 안호영
조계원 · 황명선 · 백혜련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·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

(안 제36조의4 신설 등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3항 중 “이 항”을 “이 항 및 제36조의4”로 한다.

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4(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,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·군수등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·군수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경우
2.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 제1항의 요청을 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등은 토지등

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,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제공 방법 및 회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) ①·② (생 략)	제36조(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이하 이 항에서 “동의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·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(檢印)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	③ ----- ----- -----이 항 및 제36조의4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36조의4(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,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

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에 한정하여 시장·군수등
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제36조
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
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
수 있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
가 없으면 시장·군수등은 요
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
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
경우

2.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
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
려는 경우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
·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
회신기한을 명시하여 동의서를
보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등은 제2항에 따
라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
제1항의 요청을 한 자에게 전
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
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
를 받아 주소, 연락처 등 연락
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
수 있다.

제13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~ 8. (생략)	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아니 된다.</u> <u>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제공 방법 및 회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136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제3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
---	--